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23 대덕빌딩 2층
전화 02)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or.kr>
전자우편 admin@minbyun.or.kr

문서번호 : 22-01-민생경제위원회-0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제 목 : [성명] 윤석열 대선 후보는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을 철회하라
전송일자 : 2022. 1. 28.(금)
전송매수 : 총 2매

[성명]

윤석열 대선 후보는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을 철회하라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022년 1월 기준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 10억원이 넘는 대주주의 매매차익에만 부과되고 있고, 2023년부터는 연간 5000만원을 넘는 매매차익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과세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는 개미 투자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투자액이 연간 5000만원이 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간 매매차익이 5,000만원을 넘기 힘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연간 평균 투자수익률을 10%로 가정하더라도, 연간 5천만원 이상을 매매차익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식투자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미투자자 중 이런 왕개미는 상위 1%에 불과하다

결국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주식 투자금 5억원을 넘어, 연간 매매차익 5천만원을 넘는 자산가들을 위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인 셈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국가 운영을 위한 조세의 기본 원리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국가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 힘에게는 자산불평등으로 신음하는 국민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윤석열 후보는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을 당장 철회하라

2022년 1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태근